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2005. 12. 15. 관광건설위원회

- 1. 심사 경과
 - 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 - □ 제출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2005년 11월 14일
 -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14일
 - □ 상정일자 :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 - 2005. 12. 2 :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-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소방본부장 장 석 화)

- □ 제안 이유
 - 소방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 군지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의 설치·운영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- □ 주요 내용
 - 의용소방대의 설립 및 임용권을 도자사로 일원화(안 제2조, 제10조, 제12조)
 -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통일 (안 제3조)
 - 의용소방대 운영주체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(안 제7조, 제8조, 제19조, 제21조, 제24조, 제35조)
 - 의용소방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바수당·활동보조바·보상금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규정 마련 (안 제22조 내지 제29조)
 - 재해보상금의 피청구자 및 결정권지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 (안 제3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관광건설전문위원 윤기복)

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그동안 시와 군지역이 이원화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을 일원화 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 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제5조 제3호 "대장·부대장의 정년"과 제31조 제4항 "도 및 시·군연합 회장의 정년"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하며
- 제14조의 해임사유 중 "임기만료자 및 정년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."라고 한 것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론 요지: "생 략"
- 6. 수정안 요지
 - □ 수정 이유
 -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
 - □ 수정 주요내용
 - 안 제14조 (해임사유)의 조문 중
 - □해임하여야 하며,□를 □해임하여야 한다.□로 하고 □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."를 삭제한다.
 - 안 제31조 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 제4항의 조문 중 "63세"를 "65세"로 한다.
- 7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- 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 -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5. 12. 2.

제 안 자 : 송은섭 의원외

□ 수정 이유

○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

- □ 수정 주요내용
 - 안 제14조 (해임사유)의 조문 중
 - □해임하여야 하며,□를 □해임하여야 한다.□로 하고
 - □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."를 삭제한다.
 - 안 제31조 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 제4항의 조문 중 "63세"를 "65세"로 한다.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4조 (해임사유)의 조문 중
 □해임하여야 하며,□를 □해임하여야 한다.□로 하고
 □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."를
 삭제한다.
- 안 제31조 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 제4항의 조문 중 "63세"를 "65세"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

제14조(해임사유)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,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 나야 한다.

1.~ 7. (생략)

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

- ①~③ (생략)
- ④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은 정년은 63세로 한다.
- ⑤ (생략)

수 정 안

제14조(해임사유)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. (삭제)

1. ~ 7. (개정안과 같음)

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

- ①~③ (개정안과 같음)
- ④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은 정년은 65세로 한다.
- ⑤ (개정안과 같음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기본법」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(이하 "의소대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①의소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, 읍·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. 다만,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②시, 읍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(이하 "여성대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다만,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.
- ③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 의용소방대(이하 "지역대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3조(명칭) ①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- 1. 시지역 : ○○소방서 의용소방대
 - 2. 읍, 면지역 : ○○소방서 ○○의용소방대
 - 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.
 - ③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○○지역대라 한다.
- 제4조(의소대의 표지) ①의소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.
 - ②의소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, 기, 깃발은 별표 1과 같다.
 - ③의소대의 표지와 현판은 별표 2와 같다.

제2장 조직 및 정원

- 제5조(임용기준) 의소대(여성대, 지역대를 포함한다)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. 다만, 제4호·제5호에 해당 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.
 - 1.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
 - 2.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
 - 3.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, 대장·부대장(지역대장 포함)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읍·면지역은 대원 63세, 대장·부대장(지역대장 포함)은 65세로 할 수 있다.
 - 4.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·학력·경력자
- 5. 「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제6조(조직) ①의소대에는 대장 1명, 부대장 1명, 부장, 반장 및 일반대원 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.
 - ②여성대에는 대장 1명, 부대장 1명, 부장,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 명의고문을 둔다.
 - ③지역대에는 대장 1명, 부장,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.
- 제7조(대장 등의 임무)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통할 하고 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- ③여성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여성대의 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④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- 제8조(업무분장) ①의소대 또는 지역대는 총무부,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·보급반을, 방호부에는 소화반·구조·구급반을, 지도부에는 예방반·훈련반·기술지원반을 두며, 부·반별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.
 - ②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, 홍보부에는 서무반, 홍보반을, 구호부에는 구급반·구호반을 두며, 부·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.
 - ③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9조(의소대의 정원) ①시,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, 면지역의 의소대(여성대 포함)는 30명으로 한다. 다만,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원은 20명으로 한다.
 - ②대원은 관할행정구역(동·리·통)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 용

- 제10조(대원의 임용) ①대장(여성대장 포함)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.
 - ②부대장(지역대장 포함)이하 대원은 소속 대의 대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.
 - ③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1조(대장 등의 임기) 대장(여성대장, 지역대장 포함)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의소대 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. 다만, 부대장, 부장,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 할 수 있다.

- 제12조(고문의 위촉)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.
- 제13조(임용구비서류) ①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입대원서 1통
 - 2. 이력서 1통
 - 3. 주민등록등본 1통
 - ②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- 제14조(해임사유)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.
 - 1.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
 - 2.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3.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
 - 4.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5.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·훈련에 불참한 경우
 - 6.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
 - 7. 제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- 제15조(대원의 신분증명) ①임용권자는 대장 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.

- ②임용권자는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

- 제16조(복무의무) ①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(교육·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. 이하 "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"라 한다)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 관서에 출동대기 근무를 할 수 있다.
- 제17조(금지행위) 대원은 각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 - 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 - 3.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 - 4.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
- 제18조(복제) ①대원의 제복, 모자, 부착물, 부속물, 부착물의 부착위치 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5와 같다.
 - ②단화,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방수복, 방수모, 방수화 등 안전 장구류는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④T셔츠, 우의,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5-1과 같다.

-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.
-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.
- ⑦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5-2 와 같다.
- ⑧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.
- 제19조(복무감독)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.
- 제20조(검열)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(3월과 11월)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교육 및 훈련)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2회 이상, 소방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,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제5장 경비·보수 및 보상금

- 제22조(기본경비) 대원의 수당, 장학금, 대원에 대한 상이·사망 보상금, 대의 장비관리비,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.
- 제23조(출동수당) ①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 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(단, 백원미만은 절사한다)으로 한다.

- ③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제24조(활동보조비 등)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(여비 등)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시·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·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 행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도와 시·군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연수,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5조(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)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, 부상,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
 -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요양보상
 - 2. 장애보상
 - 3. 장제보상
 - 4. 유족보상
- 제26조(요양보상)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, 치료, 수술, 약제, 입원비를 지급한다.
 - ②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년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27조(장애보상)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 장애가

-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②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6과 같으며, 별표 6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.
- 제28조(장제보상)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.
- 제29조(유족보상)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- 제30조(재해보상 청구) ①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 구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장을 경유,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 -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

- 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 ①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, 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·군 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②도연합회 구성은 시·군지역 의소대 연합회 대표로 구성하며, 시·군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.

- ③도연합회장은 시·군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하며, 시·군연합회장은 각 대장 중에서 선출한다.
- ④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
- ⑤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32조(연합회의 임무)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의소대 친목도모
 - 2. 의소대간의 협력강화
 - 3. 지역행정(소방 및 일반) 협조지원
- 제33조(연합회 경비지원) ①도는 도연합회와 시·군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시·군은 시·군연합회가 시·군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34조(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)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의소대(여성대 포함)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 칙

- 제35조(권한위임) 도지사는 의소대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3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연합회장 정년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 및 시·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소방기본법

- 제37조(의용소방대 설치 등)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·읍·면에 의용소방대(義勇 消防隊)를 둔다.
 -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, 그설치 · 명칭 · 구역 · 조직 · 임면 · 정원 · 훈련 · 검열 · 복제 · 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(隊員)의 임면 권자가 부담한다.
- 제38조(의용소방대의 근무 등) 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 -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.
 - ③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.
- 제39조(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)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 런 교육·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 - 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